

第121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第 1 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2年 5月 13日(月) 10時07分

場 所 市民行政委員會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文化福祉센터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鐘路區觀光事業에 관한過徵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
3. 서울特別市鐘路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鐘路區醫療保險運營支援을 위한條例廢止條例(案)
5. 서울特別市鐘路區青少年指導委員의委囑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文化福祉센터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觀光事業에 관한過徵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3. 서울特別市鐘路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3面
4. 서울特別市鐘路區醫療保險運營支援을 위한條例廢止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3面
5. 서울特別市鐘路區青少年指導委員의委囑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3面
6.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3面

(10時07分 開議)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중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얼마 전 여름이 든다는 입하(立夏)가 지나면서 한층 더위가 우리 가까이에 왔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계절의 변화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꿈과 희망과 설렘을 심어주는 듯합니다. 이는 60억 세계 인구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와 6월 지방선거, 그리고 대통령선거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

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성공리에 끝나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움직인다면 나라 발전의 한 축을 우리 구가 담당하리라고 본 위원장은 굳게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가 아마도 제3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해가 갈수록 제자리를 찾아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일면을 보면서 제3대 의회가 훌륭히 막을 내리는 것 같아 오늘 본 위원장은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4년 여 동안 우리 의회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때 갈등과 어려움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타 의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조화를 이끌어내고 선도적 역할을 해왔음을 높이 평가받

아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가 없이 흘린 땀들로 차곡차곡 다져진 지방자치의 토대가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3대 의회 들어 과분하게도 본 위원을 두 번이나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시고 또한 변함 없이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잘 해보려는 의욕 때문에 서로간에 본의 아니게 오해가 있었던 것들은 모두 잊어버리시고 금번 선거에서 위원 여러분의 각자 품은 뜻을 크게 펼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 또한 기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불현듯 생각나는 얼굴이 되도록 아름다운 기억들을 마음 속에 새겨두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작은 바람입니다.

언제나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종로구를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로 만들어나가는 일은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몫이 매우 크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6월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우리 의원들의 마음이 선거에만 쏠려 지역 일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우려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모든 분들의 앞날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기를 마치는 날까지 건강하시고 항상 즐겁고 보람찬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李潤植 議事擔當主事**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主事 李潤植 議事擔當主事 李潤植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2년 5월 7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文化福祉센터設置및運營

條例改正條例(案) 및 서울特別市鐘路區觀光事業에 관한過徵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 서울特別市鐘路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鐘路區醫療保險運營支援을위한條例廢止條例(案), 서울特別市鐘路區靑少年指導委員의委囑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李潤植 議事擔當主事!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을 소관 국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文化福祉센터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 서울特別市鐘路區觀光事業에관한過徵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0時15分)

○委員長 李憲九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文化福祉센터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鐘路區觀光事業에관한過徵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을 일괄 상정합니다.

董連浩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안녕하십니까? 行政管理局長 董連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李憲九 委員長**님, **洪起瑞 幹事**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文化福祉센터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2001년도에 전국적으로 동기능 전환 이후 주민문화복지센터를 개설 운영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2002년 3월 7일자로 동 조례에 대한 행정자

치부의 준칙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주민편의를 보다 증진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명과 센터 명칭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자부에서 준칙안에 제명과 센터의 명칭을 개칭해달라는 많은 건의가 있어 조례 제명을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로 하고 종전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서 종전에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문화여가 기능, 시민교육 기능, 주민편의 기능, 지역사회진흥 기능, 주민자치 기능의 다섯 가지가 있었던 것을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의 지역복지 기능을 추가해서 모두 여섯 가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0조제2항과 제3항 그리고 제5항에서 규정한 사용료 등의 징수 주체와 징수 요율 및 감면 등의 내용으로서 종전에는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사용료는 시간당 1만원, 수강료는 월 1만원 이하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사용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각각 징수하도록 하되 구청장이 사용규모에 따라 5단계로 상한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또한 센터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징수범위와 감면기준 등은 현재 우리 구 운영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0조제6항과 제7항에 규정된 사용료 등의 관리 및 집행요령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장이 징수하는 사용료는 소속공무원을 회계책임자로 지정하여 징수 관리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하는 수강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징수 관리하고 이를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반기별로 수입지출내역을 일반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위원 수를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였으나 개정(안)은 25인 이내로 하여 최저인원인 하한선을 폐지하여 지역실정에 따른 자율성을 제고하였고, 센터 운영의 자문과 조언 등을 위해 별도로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7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종전에는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토록 하였으나 보다 적정한 인사를 위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계 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 분포의 균형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어느 한 계층에서 1/3 이상이 위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 위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초에 위원 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7조제7항에 규정된 위원회 위원 등의 임기 단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 등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가급적 많은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 및 위원은 금번 개정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종전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과 많은 지역주민의 건의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文化福祉센터設置및運營

條例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憲九 董連浩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鄭聖洙 專門委員!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聖洙 專門委員 鄭聖洙입니다.

2002년 5월 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文化福祉센터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 개설 운영 등 동기능 전환 이후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 보완한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안)이 2002년 3월 7일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선된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 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문화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통일하고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구의 자치센터 재정지원 원칙을 제시하였고 민간인에 대한 업무위탁 및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 단위 자문단 설치 운영 등 민간 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 조성으로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용료와 수강료를 구분하고 사용료 등의 요율 결정방법과 감면기준을 제시하고 징수주체 및 회계책임의 명시 등 관리체계를 명확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시설 등의 노후 등 하자로 인한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피해에 대비해서 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인원 하한선을 폐지하고 구의원을 당연직으로 하는 3인 이내의 고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 자격요건 및 위촉방법과 위원 인적사항 공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고문의 역할과 위원의 자원봉사활동 의무화를 명시한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기능 전환 이후 주민자치센터 개설 운영 등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제기한 개선안 등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한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안)에 의해서 제안된 사안입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센터의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통일, 일원화하면서 자치활동 관련 기능을 강화한 것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역할 인식과 목적을 분명히 주민들에게 밝힘으로써 동 자치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센터 사용료와 수강료를 구분하고 이의 징수주체를 명시하였고, 사용료 등의 요율 결정방법 및 감면기준을 제시하고 경비지출 등 회계책임 명시 등으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한 것은 제도 초기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해소하여 동기능 전환 사업의 핵심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진보되고 발전된 제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의 임기를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것은 비책임자를 조기에 퇴출시키고 관심 있는 전문인사의 영입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잦은 임명 등 절차상 번거로움과 짧은 활동기간으로 인하여 위원들의 활동이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등 단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10조의 별표상에 책정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이 고려된 적정금액인지 여부와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행 조례상에는 구의원은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도록 강제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 제17조에서는 자치센터별로 3인 이내의 고문을 두어 조연과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화하였으며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되 위촉 여부는 전적으로 구의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임의조항으

로 규정하고 있어 본인이 위촉을 원치 않을 경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구의원은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집행부에서 주민에 대해 복리증진 등 고유업무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조직으로 동장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도록 하면서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토록 한 것은 구의원이 조언과 자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구의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미위촉될 경우 주민들에 의하여 선출된 구의원이 집행부의 조직인 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자칫 포기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비취질 수도 있으므로 임의규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관련법규와 시설사용료, 프로그램 수강료 및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및 조문별 개정 사유는 위원님들 심사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鄭聖洙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董連浩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계속해서 서울特別市鐘路區觀光事業에 관한過徵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동안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을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당해 자치구의 조례로 부과 징수토록 위임되어 1995년 11월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해 왔으나 1999년 1월 21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관광진흥법시행령으로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 서울特別市鐘路區觀光事業에 관한過徵金徵收條例를 폐지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觀光事業에 관한過徵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

(鐘路區廳長)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憲九 董連浩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鄭聖洙 專門委員!**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聖洙 專門委員 鄭聖洙**입니다.

2002년 5월 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特別市鐘路區觀光事業에 관한過徵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에 의거 자치구 조례에 위임되어 징수하던 관광사업에 대한 과징금 징수제도가 1999년 1월 21일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되었던 규정이 폐지되면서, 동법시행령 상에 직접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그 존치 실익이 상실된 종로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근거조항 소멸에 따라 종로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1995년 11월 15일 조례 제300호로 제정 운영 중인 「종로구관광사업에 관한과징금징수조례」가 1999년 1월 21일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조례 설치근거 조항이 소멸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되어 징수하던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제도가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직접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제정 운영되었던 동 조례를 폐지하고, 동법시행령 상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조례를 폐지하여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권자 현황은 위원님들 심사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鄭聖洙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일괄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회의 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17조제2항을 보면 종전에는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적절한 인사를 위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각계 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봐집니다. 왜냐하면 누가 어느 단체에 이런 것을 해도 되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종전과 똑같이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현직 구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거든요. 전체 주민에 의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구의원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洪起瑞 幹事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장이 위촉을 해왔었습니다마는 각계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보다 적절한 인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내용의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을 제시하셨는데 동장이 위촉을 하는 것은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각계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적절한 인사를 확보하고자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마는 그런 의견을 듣는 내용 중에는 당연히 우리 구의원님들도 같이 더불어서 동장에게 의견을 제시를 해서 적절한 인사를 위촉하도록 하는 데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여기 문안에다가 의원의 추천도 같이 삽입을 하자는 얘기죠. 현직 의원들도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참고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성의 문제에 있어서 기존에는 동장들이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위촉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세분화해서 제17조제2항 1호, 2호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나는 각계 단체,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기존의 이런 분들이 추천하는 후보자와 또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신청하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덕망있고 전문적 식견을 갖춘 분으로 하여금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월 7일자로 이 조례 준칙(안)이 시달된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취지로 이 개정조례가 시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구의원님을 명문화해서 후보를 추천하자는 의견말씀은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동장이 각계의 의견을 듣고 단체의 추천을 받고 하기 때문에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희망하는 분들을 접수받고 또 기존에는 당연히 우리 구의원님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임의규정으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고문으로 위촉되게 되기 때문에 이 조항하고도 상충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존의 제17조제2항 2호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지역의 대표자이신 의원님들의 추천이 충분히 반영되리라 사료됩니다.

○**洪起瑞委員** 그래서 문안에다가 의원을 같이 한란에 삽입을 해넣자 이거죠. 왜 그러나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각 동을 보면 동장하고 의원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동이 있고 그렇지 않고 동장이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잡음이 나는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위원회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자치위원회로 하다보면 너무 자치위원회가 방대해 지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복지위원회로 그때 우리 의원들이 서로 의견을 거쳐서 했었어요. 그런데 문화복지위원회로 하다보니까

형평성이나 모든 것이 그렇다 해 가지고 자치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성이거든요. 말하자면 주민이 선출해서 당선된 사람들인데 이것이 보면 자치위원장하고 구의원하고 이원화가 되어버린다, 주민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통솔력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난번 조례개정할 때도 논란이 많이 되었었는데 이런 과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위원들 한 분 한 분 위촉하는 것도 구의원들한테 추천을 동시에 받아 가지고 한다면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제가 洪起瑞 幹事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실적으로 여기에 명문화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그 지역의 대표이신 구의원님을 배제를 하고 어느 위원을 위촉한다는 것은 결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린 과정에서 말씀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조례개정 내용 중의 일부가 우리 구의원님을 당연직 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모시도록 되어 있었습니까마는 불가피하게 구의원님이 희망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위촉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다가 명문규정으로 구의원님을 제시해놓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구의원님이 당연직 고문으로 하시고자 안할 때는 조문상 문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의원님이 추천하는 것을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조문내용 전체는 구의원님들이 추천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이 모두가 아니겠습니까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렇게 놔두더라도 무방할 것이라는 저 개인의견을 말씀드립니다.

○**洪起瑞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위원들 임기가 1년으로 되죠? 위원장은 단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승인1동하고 저희 명륜3가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봐도 되죠?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경과규정에 이미 위촉된

분들의 임기는 보장됩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연임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만, 당연적인 고문 중에서 임의규정에 고문 중에서 구의원님들이 생각해서 가지고 고문직을 위촉받으셨을 경우에는 1년 임기규정이 예외입니다. 구의원 임기에 맞도록

○**洪起瑞委員** 그것은 아는데 위원장 관계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은 연임이니까 계속 위촉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위원장은 단 1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위원장들이 앞으로 아무리 유능해도 2년밖에 못하잖아요. 연임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돌아가면서 위원장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현재 승인1동하고 명륜3가동은 1년 전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 조항에 포함이 되느냐 그 얘데요.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1년 전에 실시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위촉이 되셨기 때문에 1년을 더 하실 수 있는 거죠.

○**洪起瑞委員** 그러면 1년을 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1년 이상인 것까지 임기가 보장되었습니다마는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까지 보장을 해 드리는 것이죠.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우리는 1년이 넘었죠. 2년 이상이 되어 가는 것이죠.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그렇더라도 1년까지는 보장을 해 드리는 겁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공포되면 현직 위원장들을 재선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현 위원들은 그대로 위임을 하지만 위원장들은 위원들이 재선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洪起瑞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千相旭委員! 질의하십시오.

○千相旭委員 千相旭委員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가 폐지되면 우리 종로구 세입이 얼마나 감소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千相旭委員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에 의해 가지고 세입조치가 되었던 것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 전체 세입에는 전혀 결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千相旭委員 조례는 있었는데 과징금 징수대상이 한 건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千相旭委員 일을 안했다는 얘기네요?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대상이 없어서 부과를 안한 것이었습니다.

○千相旭委員 어떤 경우에 부과를 하는데요?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양해하시면 문화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렇게 하세요.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문화진흥과장입니다. 千相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사업의 종류가 23종이 됩니다. 일반 여행업부터 시작해서 관광호텔, 휴양업, 유람선업, 국제회의시설업, 카지노, 유원시설 해서 23가지 정도 되는데 각 구청별로 보면 저희들같이 일반 여행업, 호텔업 정도이고 23종 중에서 실제 해당되는 사항이 2종에서 많게는 5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종전에 보면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약하고 그래서 각 구청별로 보면 그 동안에 조례만 법에서 제정하게 되어서 '95년부터 만들었는데 실제는 한 건도 없습니다. 관광여행업이 조금 불법을 하더라도 경고사항이고 영업정지 사항까지 가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늦었습

니다마는 법에서도 각 구별로 맡겨놓으니까 실효성이 없는데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99년도에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면서 이것은 시행령으로 위촉을 해놓자 실적도 없는 것을 각 구 조례로 해놔 봐야 혼선만 일으킨다 해서 이번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이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폐지를 하기 위해서 상정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千相旭委員 관광사업을 위반했을 경우에 영업정지도 할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과징금도 부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그렇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런데 우리 구 단위로 단속을 해도 과징금 징수대상 업소가 없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하면 이 법 자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 법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법이 있습니다. 관광사업의 종류가 23종이 되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종로 경우는 여행업하고 숙박업 정도이고 카지노나 유람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일괄적으로 규정하자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洪起瑞委員께서 주민자치센터 조례 제17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洪起瑞委員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이 되었는데 물론 이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이 자주 바뀔으로서 자치센터 운영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이 자치센터를 운영하자면 수강료도 징수해야 되고 구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업무를 숙지하려면 1년이 걸립니다. 물론 1년 연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바뀔 수 있는 사항이 농후합니다.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위원장이 큰 행사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니까 업무를 숙지할 만하면 바뀌고 그러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본 위원은 종전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1년으로 축소하게 된 것을 상정하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행정관리국장이 우리 千相旭委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千委員님께서 임기가 너무 짧음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장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한 사람이 오랫동안 위치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폐단이 많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이러한 준칙(안)을 제시를 했고 저희들이 이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 전체의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 조항을 개정하려고 저희가 제안드렸습니다.

○**千相旭委員**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위원들끼리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鄭泰淳委員! 질의하십시오.

○**鄭泰淳委員** 鄭泰淳委員입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전자에 金賢植 行政管理局長님이 계실 때, 林陞宅 企劃豫算課長님이 계실 때 우리가 전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동청사 수리비를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면 바로 장마 전에 하기로 했는데 그 사항이 지금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예산에 잡자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저번 비가 올 때 동청사를 밤에 여러 군데 다녀보고 상황실에 전화도 했었는데 그렇게 林陞宅 課長이 마지막 예산을 승인할 때 동의하고 국장도

동의했는데 지금 그분들이 떠나셨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주무국장께서는 확인을 하셔서 장마가 도래하기 이전에 전산장비라든가 동청사 새는 것에 대해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동료위원들이 주문을 하셔서 결과적으로 끝날 때 주무국장한테 동의도 받았는데 그 사항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업무가 중단되거나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잘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鄭泰淳委員**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鄭泰淳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 말이죠.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개정하는데 그러면 동의 위원회 명칭은 종전대로 주민문화복지위원회입니까?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그것에 대한 문안이 없잖아요?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있습니다. 제1조 말마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이런 조항이 있고 우선 조례 제5조부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15조제3항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그러면 앞으로는 예를 들면 효자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는 것이죠?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그렇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洪承台委員! 질의하십시오.

○**洪承台委員** 아까 洪起瑞委員하고 千相旭委員님이 말씀하신 7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선출직이고 당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고문 이렇게 해서 1년밖에 위임이 안되죠? 현재 이것이 통과가 되면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연임은 가능하죠.

○**洪承台委員** 예, 그것은 알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이죠?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1회에 한해서 연임이 아닙니다. 계속 연임입니다.

○洪承台委員 아니,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이라고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그렇죠. 위원장은 1회입니다.

○洪承台委員 그러면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거의 1년 정도 마무리가 될 시기죠?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그렇습니다. 연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洪承台委員 그러면 이것이 통과되면 명륜동이나 송인1동뿐만 아니고 전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은 전부 다시 선출해야 되겠네요?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 체계에 총 3장 24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이나 종전 조례가 다 같이 3개의 총괄 장하고 24개의 조항과 부칙이 2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부칙에 보시면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 사항이 있어요. 경과조치 제1항에 보시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위촉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는 보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연말에 위원장 임기가 다되었다 하더라도 실령, 그 기간이 1년 이상 위원장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위원장으로서 1회에 한해서 더 선임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洪承台委員 그러니까 모순성이 있다 이거예요. 1회에 한해서 재선출이 되잖아요. 이것은 부칙이예요. 부칙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7조는 회칙입니다. 1년에 한하면 1년으로 끝내서 선출하든지 해야지 부칙을 왜 넣어 가지고 복잡하게 만듭니까?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칙이 앞에서 거론된 모든 조항에 어떤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경과조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들이 연말에 임기가 다하더라도 앞으로 또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洪承台委員 연임을 하는 것은 그 지역 위원회

에서 시켜줘야지 연임 자체는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호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洪承台委員 그러니까 다시 호선이 되어야 하지 호선이 안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자치기능에서 수행하는 것을 임명하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洪承台委員 지금 자체에서 1년이 지났으면 개정된 조례 자체가 통과가 되면 지금 거의 1년이다 되었어요. 그러면 다시 호선에 의해서 선출을 해야지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경과조치에 의해서 기존의 임기는 보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1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적용 받지 않고

○洪承台委員 1년을 또 한다 그거죠? 호선을 안하더라도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뽕히게 되면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1년 간은 보장을 해주고 다음 번 선거를 해서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에 당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이죠.

○洪承台委員 예를 들어 이것이 통과가 되었는데 위원장이 1년이 되려면 2개월이 남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2개월이지만 1년을 위임시켜준다 이런 뜻입니까?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위원님! 이런 말입니다. 부칙조항에 경과조치라는 것은

○洪承台委員 부칙은 왜 둥니까? 빼버리지.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 자치센터가 작년 1월달에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벌써 했수로는 2년을 하고 계신데 그 2년은 이것하고 별개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연말에 2년이 만기된다 하더라도 동장이 위촉하게 되면 1년을 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洪承台委員 그것은 당연하죠. 호선에 의해서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그러니까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가지예요.

○**洪承台委員**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2년이 다되어 가잖아요? 두 달이 남았든 석 달이 남았든 거의 비슷할 겁니다. 선출한 것이 지역마다 며칠씩 차이가 남니다마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두 달이면 2년이 다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두 달만 하는 것이죠? 1년을 더하는 거예요?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두 달이면 임기가 다된 것 아닙니까? 종전 명칭 위원회로는, 그런데 다시 연임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洪承台委員** 연임은 알아요. 두 달 후에 연임이 안되면 바뀌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당연하죠.

○**洪承台委員** 그런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해요?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연임이 안되면 당연한 얘기죠.

○**洪承台委員** 알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자꾸 딴 소리를 해서

○**委員長 李憲九** 조금 전 千相旭委員님의 요청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時01分 會議中止)

(11時10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憲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宣相善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17조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더욱이 임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千相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임기가 보통 모든 친목회 등등 여타 단체에도 임기를 2년 정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여기에 모든 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 준칙안에 보면 지금 1년으로 하고 1회 연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해서 2년쯤 하면 많은 것을 파악하고 또 다음 기회도 부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해서 이것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먼저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2년으

로 했을 때는 또 1회 연임을 하게 되면 4년을 다 채우고 마는데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위원장들이 여러 가지로 사회에 덕망이 있습니다마는 회의 주제를 못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 못하는 분들도 가운데 몇 개 동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위원장을 바꿔야 되는데도 임기는 차지 않았고 이래서 못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체에 이렇게 1년으로 해도 다시 잘 할 수 있으면 1년을 다시 부여할 수 있으니까 1년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 위원 중에서 새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千相旭委員님께서 의견을 냈는데 먼저 질의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죠? 하한선을 어떻게 하는 거죠?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하한선을 없었습니다.

○**宣相善委員** 없었습니까?

(○**李東奎委員** 議席에서 - 전에는 15인인가로 되어 있었죠?)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예,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15인 이상으로 했죠? 그러면 하한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25인까지가 지역실정에 따라서, 하한선은 없으면 없는 그 자체입니다.

○**宣相善委員**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2명이 있어도 된다는 얘깁니까?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마는 결국 하한선을 없애는 것도 지역실정도 반영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운영토록 하는 그런 배려가 깔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회의를 진행하는데 인원이 너무 적어서, 예를 들어서 25인 이내로 구성했는데도 지금 더러 위원이 부족한 동도 있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더욱이 위원들이 100% 참석을 한다면 모르지만 한 10분 정도 있는데 두세 명이 참석하면 회의 진행을 못하는 경우

가 있거든요.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회의 참석하는 문제하고 위원회 구성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성을 상한선을 부여해서 표현했다면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하한선을 없애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그런 조치이고 일단 구성을 해놓고 회의를 참석을 적게 하시면 불참하신 위원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체를 해서 참석률이 높은 그런 위원님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하한선을 없애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宣相善委員** 하한선 측면에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예,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千相旭委員! 토론하십시오.

○**千相旭委員** 千相旭委員입니다. 의안 제1호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가 주민자치센터로 개정이 되는 것은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 가운데에서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유독 위원장에 대해서만 임기를 2년을 1년으로 축소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감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장 선출도 임명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주민들, 위원들간에 어떤 갈등도 있을 수가 있고 반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절차상 까다롭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서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는데 1년 안에 관두는 경우도 있고 물론 1회 연임이라는 단서조항은 있습니다마는 1년을 하고 관두게 되면 그러한 전례가 계속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갈등

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감지를 하고, 또한 활동에 어떠한 제약을 받음으로써 형식적인 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다, 본인의 어떠한 철학이나 의지나 어떠한 위상을 펼치기 위해서 위원장이 된 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의 위상을 펼치지 못하고 업무를 파악하자마자 임기를 마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임기는 종전과 같이 임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걸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憲九** 지금 千相旭委員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예, 洪起瑞委員! 토론하십시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千相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의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사실 위원장들이, 자질이 솔직히 말해서 형성이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에 얼마이다 보니까 위원장을 교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1년으로 하는 것을 원안으로 해서 우리가 좀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1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동의합니다.

(○**李東奎委員** 議席에서 - 국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봅시다. 행정관리국장님! 행자부 준칙상에 1년으로 하도록 그렇게 준칙안이 내려오게 있어요?)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예, 내려왔습니다.

(○**李東奎委員** 議席에서 - 우리가 여기에서 고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이고 2년이고 행자부 준칙안이 있으면 뭐하러 우리한테 그렇게 내려옵니까?)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위원장님! 질의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질의 종결이 되었는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李憲九** 됐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묻는 거니까

· (○李東奎委員 議席에서 - 준칙이나 조례안이 내려와 가지고 다루라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委員長 李憲九 洪起瑞委員님의 행자부 지침대로 원안대로, 개의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재정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洪起瑞委員님이 개의한 안대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대로 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舉手表決)

내리시고, 다음은 千相旭委員님의 동의안에,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십시오.

(舉手表決)

내리십시오. 참으로 우리 의회의 상원의장 두분들이 동의안에 찬성을 하시고 또 앞으로 구청장 후보로 나설 양반인 鄭泰淳委員의 고견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장 생각에는 행자부 준칙안이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래서 개의집에다 찬성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조금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千相旭委員님이나 洪承台 前 議長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같이 참여를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3分 會議中止)

(11時26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서울特別市鐘路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 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4. 서울特別市鐘路區醫療保險運營支援을위한條例廢止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5. 서울特別市鐘路區靑少年指導委員의委囑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6.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委員長 李憲九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鐘路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4항 서울特別市鐘路區醫療保險運營支援을위한條例廢止條例(案), 의사일정 제5항 서울特別市鐘路區靑少年指導委員의委囑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6항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일괄 상정합니다.

河徹昇 生活福祉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안녕하십니까? 生活福祉局長 河徹昇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李憲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종로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24일자 법률 제6474호에 의거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중 명칭과 용어를 변경하고, 개정된 의료급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일부 불필요한 조례내용을 삭제·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각조에 명시된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대상자”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여 정리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4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조항에서 구법인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가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문도 함께 정비하였으며, 제1항에서 기금출납명령관이 종로구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사회복지과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제5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이 기금출납공무원에게 모두 준용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를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책임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책임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분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출에 관한 제7조제1항에서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장이 의료급여비 청구를 한 때 자치구에서 검토·조정하여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토록 되어 있으나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된 본 조례의 일부를 삭제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 및 서류처리 절차 내용만 존치시켰습니다. 현 조례 제8조, 제9조, 제9조의2에서 대불금 상환에 관한 조항은 의료급여법 제21조에, 대불금 결손처분에 관한 조항은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5조에, 의료급여기금 결산보고에 관한 조항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각각 명시되어 있어 본 개정조례에 존치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 및 運用條例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憲九 河徹昇 生活福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鄭聖洙 專門委員!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聖洙 專門委員 鄭聖洙입니다.

2002년 5월 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명칭과 용어 등 개정된 관련조항의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된 의료급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는 일부 불필요한 조례내용을 삭제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종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내용 중 의료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대상자”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용어 정리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대불금의 상환, (안) 제9조에서는 결손처분, (안) 제9조의2에서 결산에 관한 보고 등은 의료급여법 및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명시되

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6474호에 의거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명칭 변경 등 개정된 관련조항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8조의 대불금의 상환, (안) 제9조의 결손처분, (안) 제9조의2의 결산에 관한 보고 등을 삭제하는 것은 의료보호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지급함에 따른 것으로서 의료급여법 및 동법시행령 또는 규칙에 각기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鄭聖洙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河徹昇 生活福祉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안녕하세요? 生活福祉局長 河徹昇입니다. 종로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시민행정위원회 **李憲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를 근거로 의료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동사무소 내에 의료보험조합 지소를 설치하고 의료보험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구·동 및 통·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4호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구법인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2000년 7월 1일자로 폐지되고 그 임무와 기능이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흡수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는 그 기능을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醫療保險運營支援을위한條例廢止條例(案)

(鐘路區廳長)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憲九 河徹昇 生活福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鄭聖洙 專門委員!**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聖洙 專門委員 鄭聖洙**입니다.

2002년 5월 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4호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본 조례 설치근거법인 국민의료보험법이 2000년 7월 1일자로 폐지되었으므로 그 존치 실익이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를 근거로 하여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동사무소 내에 의료보험조합지소를 설치하여 의료보험업무를 지원하여 왔으나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4호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부칙 제2조에 의거 본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면서 그 임무와 기능은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흡수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존치 실익이 상실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鄭聖洙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河徹昇 生活福祉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안녕하세요? 生活福祉局長 河徹昇입니다.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촉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본 조례를 근거로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지역 내 청소년 지도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논의와 자문을 위해 기존의 청소년지도위원과는 별도로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을 근거로 종로구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명칭도 기존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지도위원회의위촉및운영조례」에서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종로구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삽입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2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제2항에서는 지도위원의 수를 기존의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에서는 위원회 및 지도위원의 기능 및 임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조례 제6조에서는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9조에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10조에서는 필요한 수당이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에서는 지도위원들이 효율적으로 지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청소년위원회를 자문기구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청소년지도위원과 역할 분담을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육성업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靑少年指導委員의委囑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憲九 河徹昇 生活福祉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鄭聖洙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聖洙 專門委員 鄭聖洙입니다.

2002년 5월 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지도위원회의위촉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지역 청소년 보호·육성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의 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로구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청소년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기능 등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지도위원의 자격·위촉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인원, 위촉방법,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동별 청소년지도위원 수를 10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동별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구 주변의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우리 구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면서 감시활동도 병행하도록 임무 지워진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의 구성과 운영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동의 청소년지도위원 수를 확대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위촉된 지도위원이 청소년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 등 여건조성과 아

올려서 명확한 임무 부여 등 위원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관계법령은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鄭聖洙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河徹昇 生活福祉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안녕하십니까? 生活福祉局長 河徹昇입니다. 존경하는 李憲九 委員長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조례 제6조의2 사용료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중인 무인자동제어 공중화장실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종로1가, 인사동길 북측, 세종문화회관 등 3곳에 첨단화장실을 설치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종로3가와 종로6가 지역에도 무인자동제어 공중화장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무인자동제어화장실을 비롯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한층 더 청결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李憲九 委員長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년 한 해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憲九** 河徹昇 生活福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鄭聖洙 專門委員!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聖洙** 專門委員 鄭聖洙입니다.

2002년 5월 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하였거나 앞으로 설치할 무인자동제어 공중화장실 이용자에게 관리상 필요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조제2항에 공중화장실 이용자에게 관리상 필요한 경우 200원 이내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월드컵 대회와 내·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현재 설치되었거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우리 구 관내 무인자동제어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용료 징수근거는 3월 5일자로 서울시에서 시달된 무인자동제어 화장실 유지관리 지침에 의하여 각 구 조례에 징수근거를 두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조례에 근거를 두는 것에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상에는 사용료 징수 상한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되 앞으로 가칭 "공중화장실사용료심의위원회" 등을 별도로 두어 기간단위별로 현실사용료 금액을 심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6번의 종로구 무인자동제어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은 위원님들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鄭聖洙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宣相善委員! 질의하십시오.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요골자는 제6조제2항 사용료 신설에 대한 것만 하자는 것이죠?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예,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지금 현재 종로1가, 인사동 북측, 세종문화회관 이렇게 세 곳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용료는 지금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데 충분합니까?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예, 그렇습니다. 설치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어서 8,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운영은 모든 것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설치회사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화장지 교체비용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일주일에 롤 화장지 3개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화장지 1롤당 3,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원 수입으로 화장지하고 간단한 청소도구를 구입하는 데는 큰 애로가 없습니다. 현재 1일 사용인원이 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자동제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모든 것이 첨단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화장실에 100원을 투입하고 들어가게 되면 좌변기가 있습니다. 좌변기에서 용변을 보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면 좌변기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3개의 날개가 있어 가지고 하나는 밖에 화장실 내부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사이에 2개는 이미 컴퓨터 세척실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세척실로 들어가서 세척과 말림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宣相善委員 현재 세 군데를 실시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성공적이라고 생각됩니까?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예,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혹시라

도 일어날 수 있는 범 죄문제라든지 안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해놨습니다. 첫째로 천안에 있는 회사하고 연결이 되어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천안에 있는 회사로 연결되어서 컴퓨터시스템으로 조작할 수가 있고 119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혹시나 청소년들이 두서너 명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좋지 않은 행위를 할까봐 90kg이 넘게 되면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를 했습니다.

○宣相善委員 알겠습니다. 현재 100원의 사용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어떤 수입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내를 보행하는 시민이나 관광객이 야간에 급한 용변이 있을 때, 주간은 괜찮습니다. 마는 야간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황당합니다. 그런 시민이나 외국인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편의시설이라고 볼 때 사용료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宣相善委員 편의는 좋은데 그 외에도 별도로 여러 가지 청소나 관리 측면에서 괜찮으나 이 말입니다.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청소도 모든 것이 자동세척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분이 용변을 보고 나오게 되면 잠깐 사이에 바닥이 약간 들리면서 물세척이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좌변기는 이미 청소가 되어서 말려있던 좌변기가 밖으로 나오고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인력은 일체 들지 않고 다만, 화장지를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 정도 2롤씩 있으니까 교체하는 일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宣相善委員 하여튼 사용료는 100원이 적정하고 단지 하는 것은 화장지나 몇 가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예.

○宣相善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 질의하십시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청소년 선도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죠?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예,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지금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은 각 동별로 10명 정도로 해서 우리 구 전체에 19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분들을 활용합니까? 재위촉을 합니까?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지금 재위촉을 할 생각입니다. 그분들하고는 무관하게 새로운 분들로 위촉을 하게 됩니다. 물론 현재 지도위원 중에서 여러 가지 요건이 맞는 분은 위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지도위원은 현재 각 동에서 덕망있는 분들이 직접 관내 청소년에 대한 선도활동과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 지도에 나서는 데 반해서 지금 저희들이 구성하고자 하는 청소년위원회는 구청의 자문기구로서 우리 구가 청소년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어떤 방향이나 조언, 고견을 자문해 줄 수 있는 자문기구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새로 위촉되는 자문위원에 속해 있고 동에 있는 것은 지도위원으로 현장에서 뛰는 분들로 위촉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자문이나 이런 것을 받는 것으로 위촉을 한다는 말입니까?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예,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1개 동에 15명 이내면 이것도 300명 되겠네요.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아닙니다. 구 차원에 하나만 두게 됩니다.

○洪起瑞委員 구 차원에 하나만 15명 내외로 둔다?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1개 동에 한 분도 안 들어가겠네요?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어떤 동별 비례대표 개념을 두지 않고 의원님들 중에서 두 분, 교수나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전문가 이런 분들로 해서 15분 내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洪起瑞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洪起瑞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承台委員! 질의하십시오.

○洪承台委員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주요골자는 제6조2항에 대한 사용료를 200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무인자동제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가격을 올려 가지고, 제가 인사동에도 가보니까 아무리 무인자동제어 공중화장실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관리를 안하면 엉망입니다. 시일이 지나면 더 할 겁니다. 본 위원은 200원을 더 높여 가지고 앞으로 두 군데를 더 설치하면 다섯 군데가 아닙니까? 다섯 군데를 한 사람이 왔다 갔다 순환하면서 관리를 꼭 해야지 공중화장실이 유지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고 그냥 놔두면 엉망이 됩니다. 젊은애들이 밤에 술 먹고 때려부수고 하는 것을 보면 아실 겁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순환하면서 관리를 하면 그런 것을 제지할 수 있어요. 아무리 컴퓨터로 한다 하더라도 오는 시간도 멀고 도망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 설치 계획이 두 개로 종로3가, 종로6가인데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금년 5월중에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와서 하는 것이죠?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예,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洪承台委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위치는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인상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관리인을

두되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는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500원 정도로 확보하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무인자동화장실이나 기존의 공중화장실이 20개소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결국은 주민의 용변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는 점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화장실도 우리가 관리인을 두거든요. 그분들도 결국은 우리가 화장실에 대한 비용을 징수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 무인화장실에 대해서 돈을 받는 경우는 작동을 위해서 불가피하기 때문에 동전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 사용료 인상에 관한 문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고 다만, 저희가 200원으로 한계를 설정해놓고 지금은 100원을 받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200원 정도로 올려보는 것이고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되고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인사동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개연성이 큼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동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지역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붙여 가지고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인상 문제는 저희가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종로3가는 지하철 15번 출구로 알고 있고 버스정류장 앞이 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15번 출구면 어디입니까? 큰 건물을 말씀해주세요.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남측입니다. 거기 지형지물을 제가 쳐다봤는데 큰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洪承台委員** 장소는 얻었어요?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얻은 것이 아니고 보도상입니다. 15번 출구 옆에 3가 버스정류장입니다.

○**洪承台委員** 버스 정거장이 5개가 있습니다.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큰 지형지물은 없다고

요. 3가는 15번 출구 앞이고 6가는 동대문종합시장 차량

○**洪承台委員** 알겠어요. 도면을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제 지역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 주민들만이 아니고 많은 서울시민들이 와서 통행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마침 2002년 월드컵을 기해서 서울시에서 돈화문하고 단성사 옆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토요일데이트에서 시장을 만났어요. 만나서 놀이마당을 만들어줄 뿐 아니라 화장실을 만들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확답을 받았어요. 시장님한테, 그래 갖고 그 당시에 국장 한 분도 참석하셨고 예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로구 예산 아니죠? 그것이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예.

○**洪承台委員** 그러면 최소한 이런 장소를 얻을 때 제가 토요일데이트도 하고 전 생활복지국장도 같이 가서 확답을 받아서 이와 같이 예산을 빼왔는데 화장실 낼 때 그 지역 구의원 의견도 듣지 않고 15번 출구에 설치했다고 답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소는 나중에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清掃行政課長 權赫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보험운영
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지도위
원의위촉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
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
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5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전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
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21회 서울특별시 종
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時05分 散會)

○出席委員 9人

李憲九 洪起瑞 鄭泰淳 千相旭
朴鍾植 李東奎 金正大 宣相善
洪承台

○出席專門委員

鄭聖洙

○出席關係公務員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1. The first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ccurate records of all transactions and activities. It emphasizes that proper record-keeping is essential for ensur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financial operations. This section also highlights the role of internal controls in preventing fraud and errors.

2. The second part of the document focuses on the implementation of a robust risk management framework. It outlines the various risks that an organization may face, including financial, operational, and reputational risks. The document provides guidance on how to identify, assess, and mitigate these risks effectively.

3. The third part of the document addresses the need for continuous improvement and innovation. I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staying up-to-date with the latest industry trends and technologies. The document also emphasizes the role of leadership in fostering a culture of innovation and continuous learning within the organization.

4. The fourth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strong relationships with stakeholders. It highlights the need for clear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with customers, suppliers, and other key partners. The document also provides guidance on how to manage conflicts and resolve disputes effectively.

5. The fifth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strong ethical and legal framework. It emphasizes the need for all activities to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The document also provides guidance on how to establish a strong code of ethics and ensure that all employees understand and adhere to it.

6. The sixth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strong financial position. It highlights the need for careful budgeting and financial planning. The document also provides guidance on how to manage cash flow and ensure that the organization has sufficient resources to meet its obligations.

7. The seventh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strong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It emphasizes the need for attracting, developing, and retaining top talent. The document also provides guidance on how to create a positive work environment and promote employee well-being.

8. The eighth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strong environmental and social governance (ESG) framework. It highlights the need for organizations to be transparent about their ESG performance and to take steps to improve it. The document also provides guidance on how to integrate ESG considerations into the organization's overall strategy.

9. The ninth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strong cybersecurity framework. It emphasizes the need for organizations to protect their data and information from cyber threats. The document also provides guidance on how to assess and mitigate cybersecurity risks.

10. The tenth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strong crisis management plan. It emphasizes the need for organizations to be prepared to respond to unexpected events and crises. The document also provides guidance on how to develop and test a crisis management plan.